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4·19민주혁명회 회원 범위 확대〉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7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19민주혁명회 회원 범위 확대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4인
2. 제안일 : 2024. 10. 11.
3. 회부일 : 2024.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4·19민주혁명회의 경우 4·19혁명에 참여한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은 133명에 그치는 실정임. 이는 회원수가 8,900여명인 광복회나 93,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임.

게다가 일부 다른 보훈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4·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4·19혁명 기념 단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4·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호).

Ⅲ. 검토의견: 4·19민주혁명회 회원 범위 확대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의 유족도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단체의 회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 (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회원) ----- ----- ----- ----- --.
1. ~ 4.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5. 4·19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u>사람 <단서 신설></u>	5. ----- ----- ----- ----- <u>사람과 그 유족</u> <u>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u> <u>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u>

6 ~ 9. (생 략)	<u>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u> 6 ~ 9.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공법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있음.

□ 동 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단체 중 4·19혁명과 관련된 국가유공자¹⁾ 또는 그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는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가 있고,²⁾ 이 중 4·19민주혁명회는 4·19혁명부상자 본인만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125명, 회원 평균 연령은 81세(2024년 12월 기준)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4·19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19혁명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이에 대하여, 현행법이 4·19혁명에 참여한 당사자만을 4·19민주혁명회의 회원으로 정하고 있어, 4·19민주혁명회는 신규 회원의 발생은 없고, 기존 회원의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회원 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표 1] 「국가유공자단체법」에 근거한 공법단체 현황

(2024. 12. 기준, 단위 : 명)

단체명	설립 목적	회원 범위	회원 구성		회원수
			본인	유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국가발전, 자활	전상군경, 공상군경	○	×	105,121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몰장병 유지계승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	○	97,981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순국자 유지계승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처	×	○	69,591
광복회	민족정기 선양	애국지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	○	8,968
4·19민주혁명회	4·19이념 계승	4·19혁명부상자	○	×	125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4·19이념 계승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4·19혁명부상자의 유족	×	○	182
4·19혁명 공로자회	4·19이념 계승	4·19혁명공로자	○	×	227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재일학도의용군인	○	×	2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국가·사회 기여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	○	×	54,82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4·19혁명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4·19민주혁명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4·19민주혁명의 존속을 도모하고, 단체가 4·19혁명 이념을 계승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그 입법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4·19혁명사망자의 유족과 4·19혁명부상자의 유족을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4·19혁명부상자의 유족을 4·19민주혁명의 회원이 될 수 있게 한다면, 두 단체의 회원 범위가 중복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됨.
- 이는, 단체 설립 당시 4·19혁명에 참가하여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을 구분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각 회원의 특성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훈부가 이를 지원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이 법 및 다른 보훈 관계법률에 근거한 보훈단체³⁾ 중 광복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체적 희생으로 유공자가 된 본인과 그 유족을 각각 별개의 보훈단체 회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광복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우, 유공자와 유족이 한 단체의 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단체가 광복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2] 신체적 희생을 입은 유공자 등에 관한 보훈단체 현황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상이	전상군경·공상군경	상이군경회
		↓(사망)	
	사망	전상군경·공상군경의 유족	전몰군경유족회 또는 전몰군경미망인회
4·19혁명 관련	상이	4·19혁명부상자	4·19민주혁명회
		↓(사망)	
	사망	4·19혁명부상자의 유족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망)	
	사망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유족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 국가보훈부는, 4·19혁명부상자의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인 4·19혁명희생자유족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른 경우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회원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보훈단체의 고유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련하여,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⁴⁾

문 의 처
02)6788-5112

4) [참고] 개정안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p.9)

참 고

개정안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

단체 별	의견
4·19희생자 유족회	<u><반대, 존재가치 상실></u>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족회가 있는데도 4·19혁명당사자들이 사망시 유족이 4·19민주혁명회 회원이 되면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신규 회원 가입이 없으므로 존재 가치가 없게 되므로 반대
4·19혁명 공로자회	<u><반대, 존재가치 상실 및 법 체계 모순></u>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족회가 있는데도 4·19혁명당사자들이 사망시 유족이 4·19민주혁명회 회원이 되면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신규 회원 가입이 없으므로 존재 가치가 없게 되므로 반대 ○ 4·19혁명국가유공자 3개 단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에도 불합치될 뿐만 아니라 4·19혁명국가유공자 자격 및 예우 지원에도 커다란 모순을 초래하여 반대

자료: 국가보훈부

